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LAW Common Sense Information



글 _ 박종복 변호사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피상속인 사망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손자들 및 형제 자매들도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선친이 빚을 많이 부담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빚쟁이들의 독촉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인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본인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되고 본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가?

피상속인이 물려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을 때에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이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상속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신청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과연 본인의 진의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청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상속인들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한편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예를 들어 귀하의 모친이나 귀하의 형제 자매)이 귀하의 상속채무까지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귀

하의 모친이나 귀하의 형제 자매 등 모든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아가 귀하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들인 귀하의 자녀

들이 상속채무를 떠안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손자들도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고 손자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삼촌, 고모 등)도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채무를 부담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